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21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 김수흥 · 김한정 · 신정훈

서동용 • 윤준병 • 김윤덕

민병덕 · 맹성규 · 이명수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20 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370원, 263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 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대외 부분의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가 급 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 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 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법률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②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	③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	
런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	
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세율의 <u>100분의 30</u>	<u>100분의 60</u>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	
정할 수 있다.	<u></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